

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54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9. 1 .

발 의 자 : 김태훈 의원 외 4인

1. 개정이유

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의3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

나. 예산조치 : 관련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3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) ①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%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교주차장 및 운동장 야간개방 사업
2.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
3. 학교·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사업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2조의3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) ①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%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교주차장 및 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2.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3. 학교·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사업

관계 법령

□ 주차장법

제3조 (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) ①특별자치도지사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"이라 한다)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·용도지역·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(이하 "조사구역"이라 한다)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.7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방법·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[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](#). <개정 2008.2.29>

[본조신설 2003.12.31]

제4조 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①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[제3조 제1항](#)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(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.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)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](#)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

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·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.

③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,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3.12.31]

제4조의2 (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·관리계획) ①[제4조제2항](#)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·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

2.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

3.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

4.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

5.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자원조달 계획

6.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②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[제4조제2항](#)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·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·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[대통령령이 정하는](#)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·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3.12.31]

제4조의3 (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[제4조제1항](#)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,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3.12.31]

